

서울특별시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 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387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1년 5월 25일
- 회 부 일 : 2021년 5월 31일

2. 제안이유

- 우리시 소속 서울시립미술관은 천경자 컬렉션 및 가나아트 컬렉션과 같은 우수 컬렉션을 유치하기 위해 사단법인 권진규기념사업회 및 (고)권진규 작가 유가족과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협약’을 체결하고 권진규 작가의 작품 141점을 기증받고자 함
- 체결 예정인 협약에 따르면 수증기관인 우리시는 기증작품을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립미술관의 남서울미술관 1층에 권진규 작품 상설 전시공간을 설치 및 운영”하고 “2022년 권진규 작가 탄생 100주년 기념전을 개최”하기로 함
- 법률지원담당관의 사전 검토 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의무사항을 담은 협약이 체결되면 우리시가 전시회를 개최할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주요내용

가. 컬렉션 개요

- 기증 작품 : 141점
- 기증 신청자 : (사)권진규기념사업회 및 유가족

나. 기증 조건

- 서울시립미술관 내 상설 전시공간 설치 및 운영
- 2022년 권진규 작가 탄생 100주년 기념전 개최

다. 주요 추진 경위

- '20. 8. 19. 작품 인도 확정 선고(춘천지방법원)
- '20. 8. 24/9. 10. 서울시 문화본부, 권한대행 메모보고
("권진규 컬렉션 수증 및 남서울미술관 상설 추진")
- '20. 9. 사전협의((사)권진규기념사업회)
- '20. 9. ~ 권진규컬렉션 TF 구성 및 운영
※ 수집연구과(수증, 연구), 총무과(법률), 시설팀(시설)
- 1차 회의('20. 9. 24.), 2차(10. 14.), 3차('21. 1. 6.),
4차(2. 2.), 5차(4. 21.)
- '20. 11. 11. 세마인 정기 후원회 개최(권진규 컬렉션 대외협력)
- '21. 1. 25. 기증작품 1차 실견
- '21. 2. 1. 기증신청서 접수
- '21. 2. 5. 기증작품 2차 실견
- '21. 2. 16.~18.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추진
- '21. 3. 23. 권진규 컬렉션 수증 계획 수립
- '21. 3. 조건부 기증에 대한 '시의회 동의' 필요 여부 법률 검토
(법률지원담당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검토결과 : 의회 동의 절차 필요
- ▶ 기증협약이 체결되면 우리시는 기증작품에 관하여 상설전시공간을 설치·운영하고 전시회를 개최할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의회 동의 후 기증협약 체결

- '21. 3. 23. 기증조건 이행 관련 합의(미술관/기증자)
 - 100주년 기념전 개최 : '22년 4월 서소문 본관 개최
 - 서울시립미술관 내 상설 전시공간 설치 및 운영 : '23년 권진규 상설전 개관(남서울미술관 1층 예정)
- '21. 4. 29.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 141점 수증 승인
- '21. 5. 13.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수증 승인 작품 141점 평가액 결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 제1항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6항

나. 예산조치 : 권진규 컬렉션 상설전시 예산 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권진규 작가 작품은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에서 기증 받고, 권진규 작가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 추진팀에서 기증 받을 예정임

5. 검토의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의무사항(상설전시 운영 및 기념전 개최)을 담은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제4조(협약체결)

-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기본 조례」 제55조의 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 중기(2020-2023) 소장작품 수집 계획〉(2020.11.)을 세우고 기존 소장품의 분석 및 신규 분관과

의 협력적 수집 전략을 통하여 컬렉션을 특화해 나갈 예정이다.

미술관의 소장품은 우수 컬렉션을 유치하여 보존 활성화함으로써 미술 기반 콘텐츠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음.

〈2020년 서울시립미술관 중기(2020-2023) 소장작품 수집 계획〉

- 신규 분관과 연계한 체계적·조직적 수집을 통해 컬렉션 특화
- 1950년대 이후 한국미술의 흐름 조망을 위한 미술사적 보완
- 부문, 시기, 사조, 성별, 주제별 등 기소장품의 강점을 집중 특화하여 컬렉션 경쟁력 강화
-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작 수집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 수증 유치를 통한 국내 대표 작가 컬렉션 구축

〈서울시립미술관 시기별 중점 수집 방향〉

1985-2001	→	2002-2009	→	2010-2019
컬렉션 형성		컬렉션 확대		컬렉션 균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우수작가 작품 우선 수집▶ 중진 작가 작품 우선 수집▶ 서울상징 작품 우선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미술사 주요작품 확보▶ 청년 및 미소장작가의 우수작품, 기획전 출품작 수집▶ 한국 근현대미술 주요 작가, 주요 원로 및 작고작가의 초기 작품 등 중점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미디어, 설치, 조각, 공예 등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부문 수집 확대로 컬렉션의 장르별 균형 모색▶ 여성작가 작품 수집 비중 증가 및 북서울미술관, 야외조각공원을 위한 조각, 설치 작품 수집

나. 수증 현황

- <미술관 소장작품확보>는 서울시립미술관이 국내외 현대 및 동시대 미술문화 자산을 확보하여 소장작품 컬렉션을 구축하고, 이를 전시, 교육 및 관련 연구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2017년까지 20억원대를 유지하던 소장작품 확보 예산이 2018년 16억원으로 감액된 이래, 2020년까지 16억원으로 동결되었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억원 감액된 15억원으로 편성되었음.

<작품 수집(구입) 예산>

예산 과목	연도	예산액 (단위:천원)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2017	2,000,000
	2018	1,600,000
	2019	1,600,000
	2020	1,600,000
	2021	1,500,000

- 2001년에는 박서보와 백남준의 작품이 수집되었고, 2009년에는 김환기와 유영국, 2010년은 이우환과 장욱진 등의 작품을 구입하였으나 관련 사업의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고가의 우수 작품 수집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소장작품 수집 작품 수(점)가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어 고가의 미술사적 대표작품, 동시대 우수 작품을 수집하기보다는 저가의 작품들을 수집하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수집경향에 대한 문제점이 우

리위원회에서 지적된 바 있음.

- 주요 대량 기증 컬렉션으로는 1998년 천경자 컬렉션(93점), 2001년 가나아트 컬렉션(200점), 2019년 최민 컬렉션(161점), 2020년 김인순 컬렉션(106점)이 있음.

〈소장작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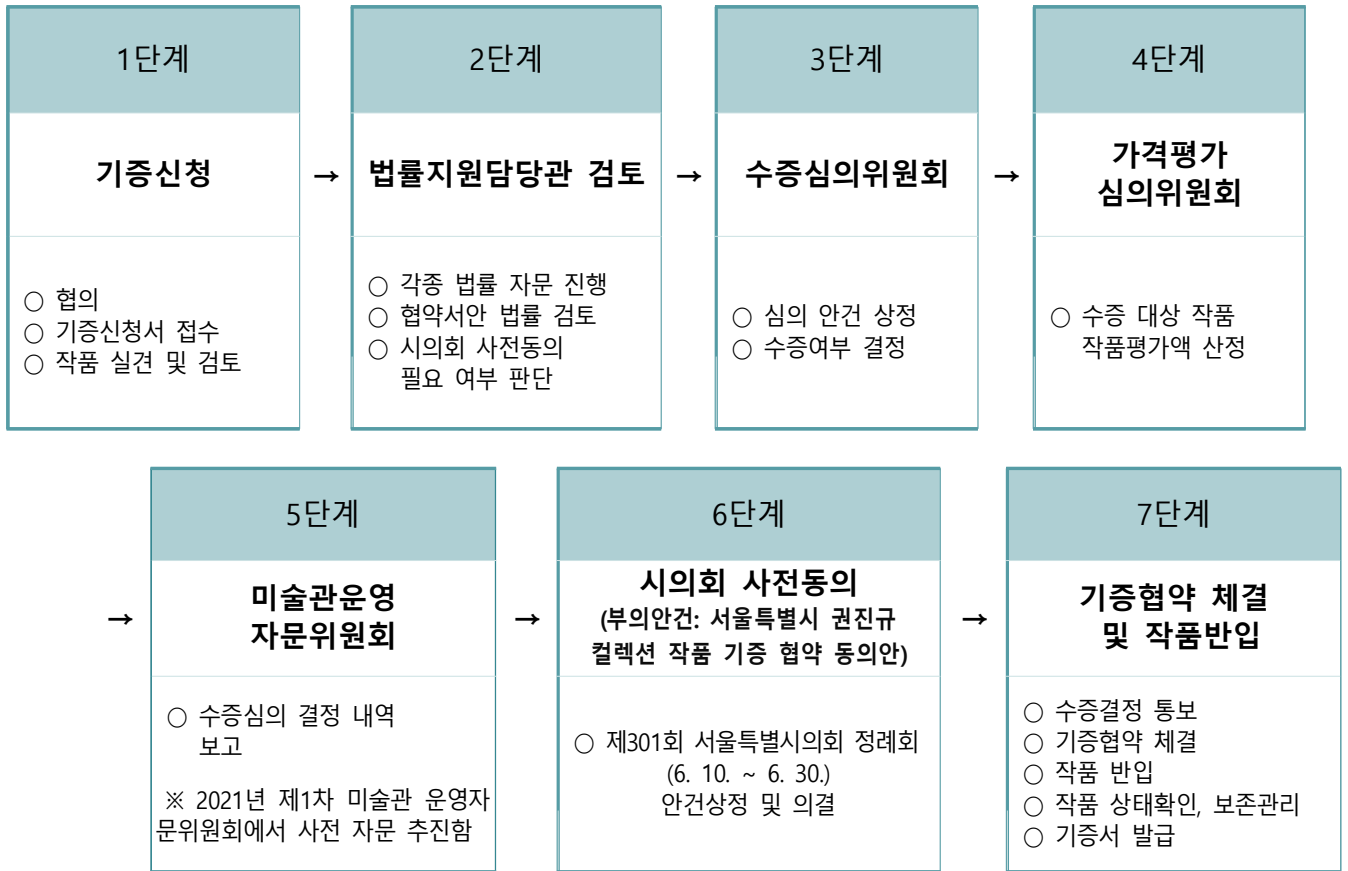
구분	총합계	한국화	회화	드로잉 & 판화	사진	서예	디자인	조각	설치	뉴미디어	공예
총 작품수	5,387	659	1,888	500	1,231	87	19	445	160	245	153
구입	3,501	342	1,237	306	711	26	-	381	144	229	125
기증	1,876	309	649	194	520	61	19	64	16	16	28
관선환영구입대	10	8	2	-	-	-	-	-	-	-	-
비율	100%	12.2%	35%	9.3%	22.9%	1.6%	0.4%	8.3%	3%	4.5%	2.8%

다. 기증협약의 타당성

1) 절차적 타당성

- 소장작품 확보는 구입과 수증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수집은 제1차(3월~8월)와 제2차(9월~12월)로 나뉘어 연 2회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공모·학예직 제안의 방법으로 수집 대상작을 구성하고, 내부선별회의, 소장작품추천회의, 가격평가심의위원회,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의 4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
- 수증(기증)은 기증신청 접수를 통해 수증대상작품을 구성하고, 수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증작을 결정하며 관련 절차는 아래와 같음.

〈수증(기증) 절차〉



2) 내용적 타당성

가) 소유권 확인여부

- “수증(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작품을 미술관이 무상양도 받아 소장작품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등록할 필요가 없고, 예술가의 권익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협회도 없기 때문에 예술 업계에서 위작 시비는 매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

- 서울시립미술관은 진품확인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3조(작품수집절차)제2항에 따라 진품보증서 요구가 가능하며,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9조에서 진품확인과 관련하여 생존작가의 경우에는 작가의 확인을, 사망한 작가의 경우에는 유족의 확인 및 관련 전문가의 감정 등을 요구하고 있음.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3조(작품수집절차)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반조치 시 진품의 유입을 위해 작가 본인일 경우, 규정 제7호서식에 의한 진품보증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작고 작가일 경우, 공인된 감정기관의 진위 감정서를 징구할 수 있다. 작가본인은 아니나 작가가 생존하고 있을 경우, 규정 제7호서식에 의한 진품보증서 또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진위 감정서를 징구할 수 있다. 단 기증의 경우 작고작가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술관 예산으로 공인된 감정기관의 진위 감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9조(진품확인)

관장은 수집이 결정된 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진품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9.>

1. 작가 혹은 유족의 확인
2.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정
3. 기타 진품 근거 자료에 대한 수집담당자의 확인

- 본 협약의 기증 주체는 (사)권진규기념사업회와 유족으로서 (사)권진규기념사업회 기증의 경우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사)권진규기념사업회의 작품 소유권 확인이 필요하며, 유족 기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법적 상속권 및 작품 소유권 확인 등을 통한 진품확인 절차가 필요함.

〈수증(기증) 에 필요한 서류〉

[신청 시]	[기증협약 체결 및 반입 시]
1. 작품기증신청서 2. 작품설명서 3. 작가이력서	4. 기증협약서 5. 진품보증서 6. 저작물이용허락서 7. 설치매뉴얼(필요 시)

- 세계 예술업계는 프로비넌스(provenance, 작품의 출처)¹⁾에 1) 영수증 및 판매 청구서, 2) 과거 가치평가 관련 서류, 3) 경매 카탈로그, 4) 미술관 및 갤러리 전시 카탈로그, 5) 과거 박물관 또는 기업의 컬렉션일 경우 매각을 나타내는 재고 번호 등의 문서를 포함하여 진품임을 보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프로비넌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진품보증 없이 예술품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음

- 서울시립미술관은 진품확인과 관련 증빙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1) 기증협약서 내 "소유권 진술 및 보장 조항" 2)을 삽입하

1) 예술품 프로비넌스는 경매회사, 아트 딜러 및 갤러리, 소장자 등의 작품 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갤러리 및 박물관의 전시 정보까지 '작품 전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모두 포함함.
 2) "기증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기증자는 그가 기증 작품의 유일한 소유권자이며 기증 작품을 서울시립미술관에 양도할 수 있는 온전한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보장합니다."라는 조항 명시

고, 2) '미술품 인도 소송 판결문' 및 판결문에 따른 인도 조건 이행 확인증(피고에 대한 입금확인증) 제출, 3) 소유권이 유족으로부터 (사)권진규기념사업회에 이전되었다는 점을 기재한 서류 등의 확인을 통해 기증품이 진품임을 확인하였음.

나) 소유권과 저작권 양도 여부

- 미술품에서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개념으로 미술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라고 할 지라도 대상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만을 갖게 되는 것이며, 저작권(저작권인격권³⁾과 저작재산권⁴⁾)까지 함께 양도받는 것은 아님.

따라서 미술품을 매수한 후 복제, 배포, 전송의 방식으로 저작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술품 매매 계약과 별도로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본 협약 제3조는 소유권은 협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은 수증기관인 서울시립미술관에 귀속하며 저작권은 기증자(유족,(사)권진규기념사업회)에게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기증자가 수증기관인 서울시립미술관에 저작권 이용을 허락함을 명시하고 있음.

3)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로 양도불가함.

4)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의미함.

다) 기증(수증) 조건의 적정성 여부

- 지금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상설전시 개최 및 운영을 조건으로 수증을 받은 경우는 총 2건으로(1998년 천경자 컬렉션, 2001년 가나아트 컬렉션) 천경자 상설전시는 2002년부터, 가나아트 컬렉션 상설전시는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천경자 컬렉션 기증(수증)협약의 경우 소유권 뿐 아니라 저작권까지 양도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작가의 양도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임.

〈천경자화백 저작권 양도증〉

- | |
|--|
| <p>1. 기증협약서에 추가하여 천경자화백이 제작한 미술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을 서울특별시에 양도한다. 단, 천경자화백 생존시에 한해서 저작권 사용료의 10%를 천경자화백에게 지급한다.</p> |
|--|

- 권진규 작가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도쿄국립근대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고려대학교박물관,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삼성미술관 Leeum, 하이트문화재단 등 국내외 우수 미술관·문화기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서울시립미술관의 권진규 컬렉션 기증(수증)협약은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권진규 작가 작품을 수집 연구하여 서울시립미술관의 특화 컬렉션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음.

- 본 협약은 무상기증으로 상설전시와 100주년기념전 개최를 조건으로 하는 기증(수증)인데 141점의 작품 평가액은 약 81억 5천9백만원이며, 2023년부터 권진규 컬렉션을 남서울미술관 상설전시로 운영 시 연평균 약 1억 6천6백만원⁵⁾이, 2022년 권진규 작가 탄생 100주년 기념전 개최에 약 1억 9천만원⁶⁾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라. 종합 의견

- 대규모 기증(수증)을 통한 미술관 수집의 경향이 미술관의 성격을 좌우하는 만큼 수집 정책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효율적으로 소장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임.

특히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수집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집 정책이 필요함.

- 특히 상설전시 개최 운영을 조건으로 기증(수증)하는 경우 일반 무조건부 기증(수증)과는 달리 상설전시장 운영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기증(수증)을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노재윤	02-2180-8118

5) 서울시립미술관 천경자 및 가나아트 컬렉션 등 2개의 상설전시 개최 및 운영 예산은 연평균 166,153천원임.

6)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회당 예산은 연평균 190,000천원임.

〈참고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체결 예정인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협약서’에 따르면 수증기관인 우리시는 기증작품을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립미술관의 남서울미술관 1층에 권진규 작품 상설 전시공간을 설치 및 운영”하고 “2022년 권진규 작가 탄생 100주년 기념전을 개최”하기로 하였기에 전시 개최를 위한 비용이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854,612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70,922천원임
- 추계의 전제
 - 2022년 권진규 작가 탄생 100주년 기념전 개최에 190,000천원 소요(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회당 예산 반영)
 - 2023년부터 남서울미술관 권진규 상설전시 개최 및 운영 비용 발생
 - 최근 3년 동안 서울시립미술관 천경자 및 가나아트 컬렉션 등 2개의 상설전시 개최 및 운영 예산은 2019년 187,610천원, 2020년 187,610천원, 2021년 123,240천원임(연평균 166,153천원)
 - 이에 따라 2022년 권진규 기획전시 개최에 190,000천원, 2023년부터 남서울미술관 상설전시 개최에 연평균 166,333천원 예산 소요 가정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854,612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전시 예산	190,000	166,153	166,153	166,153	166,153	854,612
	소계(b)	190,000	166,153	166,153	166,153	166,153	854,612
□ 총 비용(b-a)		190,000	166,153	166,153	166,153	166,153	854,612

4. 작성자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수집연구과장

주무관

김희진

전소록

박지수

☎ 02-2124-8954

e-mail : jis32@seoul.go.kr

권진규 컬렉션 추진 경위

○ '15. 5.	권진규 작가 유가족은 대일광업과의 사이에 '권진규 미술관' 설립 및 이를 위한 권진규 작품의 양도양수 약정을 체결 (조각·유화를 비롯한 작품 522점과 메모 196점 등 총 718점)
○ '19. 2.	유족은 '권진규 미술관' 개관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을 이유로 대일광업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미술품 인도 청구” 소송 제기
○ '20. 8. 19.	작품 인도 확정 선고(춘천지방법원)
○ '20. 8. 24.	서울시 문화본부, 권한대행 메모보고 (“권진규 컬렉션 수증 및 남서울미술관 상설 추진”)
○ '20. 9.	사전협의((사)권진규기념사업회)
○ '20. 9. ~	권진규컬렉션 TF 구성 및 운영 ※ 수집연구과(수증, 연구), 총무과(법률), 시설팀(시설) - 1차 회의('20. 9. 24.), 2차(10. 14.), 3차('21. 1. 6.), 4차(2. 2.), 5차(4. 21.)
○ '20. 11. 11.	세마인 정기 후원회 개최(권진규 컬렉션 대외협력)
○ '21. 1. 25.	기증작품 1차 실견
○ '21. 2. 1.	기증신청서 접수
○ '21. 2. 5.	기증작품 2차 실견
○ '21. 2. 16~18.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추진
○ '21. 3. 23.	권진규 컬렉션 수증 계획 수립
○ '21. 3.	조건부 기증에 대한 '시의회 동의' 필요 여부 법률 검토 (법률지원담당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검토결과 : 의회 동의 절차 필요 ▶ 기증협약이 체결되면 우리시는 기증작품에 관하여 상설전시공간을 설치·운영하고 전시회를 개최할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의회 동의 후 기증협약 체결

○ '21. 3. 23.	<p>기증조건 이행 관련 합의(미술관/기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주년 기념전 개최 : '22년 4월 서소문 본관 개최 - 서울시립미술관 내 상설 전시공간 설치 및 운영 <li style="padding-left: 20px;">: '23년 권진규 상설전 개관(남서울미술관 1층 예정)
○ '21. 4. 29.	<p>수증심의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1점 수증 승인
○ '21. 5. 13.	<p>가격평가심의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증 승인 작품 141점 평가액 결정
○ '21.. 6 4~10	<p>운영자문위원회 보고</p>

권진규 컬렉션 관련 향후 계획

권진규 컬렉션 연구협력 프로젝트

- 기 간 : 2021. 8. ~ 12.
- 대 상 : 권진규 컬렉션 141점
- 방 법 : 객원 연구원 섭외 및 내부 학예연구진 협업
- 내 용
 - 작가 및 작품 기본정보 확인 및 이력조사
 - 작가 및 작품 연구, 작품 해설문 작성, 참고문헌 정리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전>

- 기 간 : 2022. 4. 7. ~ 6. 4.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 대 상 : 약 150여건(작품 100, 자료 및 영상류 50)
- 내 용
 - 권진규 탄생('22. 4. 7.) 100주년을 기념하여 작가의 작업세계를 제작 ('22 기관의제), 동시대성, 뉴미디어 키워드로 접근
 - '21 서울시립미술관 수증작품, 타 기관 및 유가족 소장품, 자료, 뉴미디어 커미션 등으로 구성
 - 도록 출간, 지역 국공립미술관 순회 추진

권진규 상설전시

- 기 간 : 2023. ~ 연중
(※작품 보존을 위한 안식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장 소 : 남서울미술관 1층
- 대 상 : 권진규 컬렉션 141점 및 자료
- 내 용
 - 분관 전체의 성격과 전시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출품작 선별 및 전시 구성
 - 작가 및 작품 관련하여 연구 및 축적된 내용을 공개
 -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를 상시 제공

고 권진규 작가 소개

□ **성명 : 권진규 (함경남도 함흥, 1922~1973)**

○ **학력 및 경력/활동**

- 1953 무사시노미술대학 조각 전공 학사
- 1959 동선동에 ‘권진규 아틀리에’ 공간 제작
- 1960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각 강의
- 1963 덕성여자대학 의상학과, 생활미술과 조각 강의

○ **수상경력**

- 1952 제37회 이과회전 <백주몽>으로 입선수상
- 1953 제38회 이과회전 <기사>, <마두A>, <마두B>로 특대 수상

○ **전시경력**

- 1965 《권진규 조각전》, 신문회관(서울/수화랑 주최)
- 1968 《권진규 개인전》, 니혼바시화랑(동경)
- 1971 《권진규조각작품전》, 명동화랑(서울) 개관1주년기념
- 2009 《권진규展》, 국립현대미술관



- 불필요한 장식물을 극도로 배제하고 명상과 정신적 구도 자세를 집약적으로 표출한 현대 조각의 거장
- 점토를 빚어 구운 테라코타, 건칠을 주재료로 한 인물상, 자소상, 동물상, 신상 등
- 자신의 끊임없는 심리적 탐색 과정을 강렬한 형상으로 작품화

□ **주요 작품**



<지원의 얼굴>, 1967, 테라코타, 49x32x27cm, 개인 소장



<나부>, 1953, 석고, 167×63.7×35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말>, 1969, 테라코타, 34x58x20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